|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 유관 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20호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이하 ‘이월공제 세액 환급’)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납세자의 이월공제 세액 환급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동시에 아래 조건(이하 ‘이월공제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증량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 2019년 4월 세액 귀속기간부터 연속 6개월 (분기별 납세일 경우, 연속 2분기) 증량 이월공제 세액이 모두 0보다 크고, 6개월째 증량이월공제 세액이 50만 위안 보다 낮지 않은 경우  1.2 납세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경우  1.3 세액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수출 세액 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정황이 없는 경우  1.4 세액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1.5 2019년 4월 1일부터 즉시징수 즉시환급 및 선(先)징수 후(后)환급 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 증량 이월공제 세액은 2019년 3월 말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을 의미한다.  2. 납세자가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증량 이월공제 세액×매입세액 구성비×60%  매입세액 구성비는 2019년 4월부터 세액 환급 신청 전 세액 귀속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전용 발행기기로 발행한 자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포함), 해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납세 완납 증명에 명기된 증치세액은 같은 기간 전부 기공제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다음 달부터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이하 ‘신고 기간’) 내 당기 증치세 납세 신고를 완료한 후, 전자 세무국 또는 세무처리 서비스 관청에 <세액 환급(공제)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세자가 화물 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여 이월공제 세액 환급 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동일한 신고 기간 내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5.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한 납세자가 화물 용역을 수출하고 국경간 과세행위를 행하여 면세∙공제 세액 환급 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기간에 맞춰 면세∙공제 환급을 신고하여야 한다. 당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가 가능한 수출 매출액이 0인 경우, 면세∙공제 세액 환급은 ‘0’신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납세자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우선 면세∙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면세∙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한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시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진행한다.  7. 세무기관은 “창구 접수, 내부 전환, 제한 시간내 처리, 창구 발급” 원칙에 따라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 부합 여부,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 등에 대하여 심사 확인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8.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고 본 공고 제12조에 나열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허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본 공고 제9조 제2항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술한 10 영업일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에 대한 심사 비준일로부터 계산한다.  9. 납세자는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기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9.1 납세 신고 및 추가 조사 및 평가 조정 등의 원인으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이 변경될 경우,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상의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9.2 납세자가 동일한 신고 기간 내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신청할 경우, 또는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신청 시, 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에 대한 심사 비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에 대한 심사 비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상의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라 함은 세무기관이 당기에 이미 심사 비준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의 제15번째 란 즉 ‘면세, 공제, 환급 받아야 할 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9.3 납세자가 증치세 미납 세금이 존재하고 동시에 기말 이월공제 세액이 존재할 경우,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서 증치세 미납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확정한다.  10.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 신고와 면세∙공제 세액 환급 신고를 처리한 후, 세무기관이 그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심사 비준하기 전, 전기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비준할 경우, 최근 1분기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 납세자용)> 기말 이월공제 세액에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이월공제 환급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당기 면세∙공제 세액 환급 중 환급 받아야 할 세액과 면세∙공제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은 이월공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무기관이 당기에 이미 심사 비준을 하였으나 <증치세 납세신고표 부속 자료(2) (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2번째 란 ‘전기 이월공제 세액 환급’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월공제 환급세액을 의미한다.  11.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허가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 기각에 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세무기관이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처리하는 동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게 아래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잠정 보류한다.  12.1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이 존재할 경우  12.2 세무조사에 입안되고 종결되지 않은 경우  12.3 증치세 신고 비교 대조 시 비정상적이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  12.4 취득한 증치세 비정상적인 세금 공제 증빙이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  12.5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13. 본 공고 제12조에서 열거한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 등 정황이 이미 해소되고 관련 사항 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1 납세자가 여전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를 위해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 등 정황이 해소되고 관련 사항을 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허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한다.  13.2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액 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공제 세액을 허가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 등 정황이 해소되고 관련 사항을 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 심사 비준을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 기각에 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발견한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에 대해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구체적 처리 기간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확정한다.  14. 세무기관 증치세 세무 관련 리스크 의문점에 대해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시 납세자가 수출 환급 세액 편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증치세 중대 세수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월공제 세액 처리를 중단하고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중단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영업일 내 납세자에게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 중단에 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한다.  세무기관은 증치세 중대 세수 위법 행위 혐의를 받는 납세자에 대해 조사 처리를 완료한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이월공제 세액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 공고에 규정된 이월공제 세액 환급 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5.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이월공제 세액을 허가한 <세무사항통지서>를 수령한 당기에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한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에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을 상계 처리하고, 증치세 납세 신고 처리 시, 상응하는 <증치세 납세신고표 부속 자료(2) (당기 매입세액 명세)> 제22번째 란 ‘전기 이월공제 세액 환급’에 기입한다.  16. 납세자가 매입 허위 증액 및 허위 신고 또는 기타 사기 수단으로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편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편취한 환급세액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7. 본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세액 환급(공제) 신청서  국가세무총국  2019년 4월 30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办理增值税期末留抵**  **税额退税**  **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20号  《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号）规定，自2019年4月1日起，试行增值税期末留抵税额退税（以下称留抵退税）制度。为方便纳税人办理留抵退税业务，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1. 同时符合以下条件（以下称符合留抵退税条件）的纳税人，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   　　（一）自2019年4月税款所属期起，连续六个月（按季纳税的，连续两个季度）增量留抵税额均大于零，且第六个月增量留抵税额不低于50万元；  　　（二）纳税信用等级为A级或者B级；  （三）申请退税前36个月未发生骗取留抵退税、出口退税或虚开增值税专用发票情形的；  （四）申请退税前36个月未因偷税被税务机关处罚两次及以上的；  　　（五）自2019年4月1日起未享受即征即退、先征后返（退）政策的。  增量留抵税额，是指与2019年3月底相比新增加的期末留抵税额。   1. 纳税人当期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按照以下公式计算：   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增量留抵税额×进项构成比例×60%  进项构成比例，为2019年4月至申请退税前一税款所属期内已抵扣的增值税专用发票（含税控机动车销售统一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解缴税款完税凭证注明的增值税额占同期全部已抵扣进项税额的比重。  　　三、纳税人申请办理留抵退税，应于符合留抵退税条件的次月起，在增值税纳税申报期（以下称申报期）内，完成本期增值税纳税申报后，通过电子税务局或办税服务厅提交《退（抵）税申请表》（见附件）。  　　四、纳税人出口货物劳务、发生跨境应税行为，适用免抵退税办法的，可以在同一申报期内，既申报免抵退税又申请办理留抵退税。  五、申请办理留抵退税的纳税人，出口货物劳务、跨境应税行为适用免抵退税办法的，应当按期申报免抵退税。当期可申报免抵退税的出口销售额为零的，应办理免抵退税零申报。  六、纳税人既申报免抵退税又申请办理留抵退税的，税务机关应先办理免抵退税。办理免抵退税后，纳税人仍符合留抵退税条件的，再办理留抵退税。  七、税务机关按照“窗口受理、内部流转、限时办结、窗口出件”的原则办理留抵退税。  税务机关对纳税人是否符合留抵退税条件、当期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等进行审核确认，并将审核结果告知纳税人。  八、纳税人符合留抵退税条件且不存在本公告第十二条所列情形的，税务机关应自受理留抵退税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完成审核，并向纳税人出具准予留抵退税的《税务事项通知书》。  纳税人发生本公告第九条第二项所列情形的，上述10个工作日，自免抵退税应退税额核准之日起计算。  九、纳税人在办理留抵退税期间发生下列情形的，按照以下规定确定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  　　（一）因纳税申报、稽查查补和评估调整等原因，造成期末留抵税额发生变化的，按最近一期《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期末留抵税额确定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  　　（二）纳税人在同一申报期既申报免抵退税又申请办理留抵退税的，或者在纳税人申请办理留抵退税时存在尚未经税务机关核准的免抵退税应退税额的，应待税务机关核准免抵退税应退税额后，按最近一期《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期末留抵税额，扣减税务机关核准的免抵退税应退税额后的余额确定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  税务机关核准的免抵退税应退税额,是指税务机关当期已核准，但纳税人尚未在《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第15栏“免、抵、退应退税额”中填报的免抵退税应退税额。  （三）纳税人既有增值税欠税，又有期末留抵税额的，按最近一期《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期末留抵税额，抵减增值税欠税后的余额确定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  十、在纳税人办理增值税纳税申报和免抵退税申报后、税务机关核准其免抵退税应退税额前，核准其前期留抵退税的，以最近一期《增值税纳税申报表（一般纳税人适用）》期末留抵税额，扣减税务机关核准的留抵退税额后的余额，计算当期免抵退税应退税额和免抵税额。  税务机关核准的留抵退税额,是指税务机关当期已核准，但纳税人尚未在《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二）（本期进项税额明细）》第22栏“上期留抵税额退税”填报的留抵退税额。  十一、纳税人不符合留抵退税条件的，不予留抵退税。税务机关应自受理留抵退税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完成审核，并向纳税人出具不予留抵退税的《税务事项通知书》。  十二、税务机关在办理留抵退税期间，发现符合留抵退税条件的纳税人存在以下情形，暂停为其办理留抵退税：   1. 存在增值税涉税风险疑点的； 2. 被税务稽查立案且未结案的； 3. 增值税申报比对异常未处理的；     （四）取得增值税异常扣税凭证未处理的；  （五）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十三、本公告第十二条列举的增值税涉税风险疑点等情形已排除，且相关事项处理完毕后，按以下规定办理：  　　（一）纳税人仍符合留抵退税条件的，税务机关继续为其办理留抵退税，并自增值税涉税风险疑点等情形排除且相关事项处理完毕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审核，向纳税人出具准予留抵退税的《税务事项通知书》。  （二）纳税人不再符合留抵退税条件的，不予留抵退税。税务机关应自增值税涉税风险疑点等情形排除且相关事项处理完毕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审核，向纳税人出具不予留抵退税的《税务事项通知书》。  税务机关对发现的增值税涉税风险疑点进行排查的具体处理时间，由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确定。  十四、税务机关对增值税涉税风险疑点进行排查时，发现纳税人涉嫌骗取出口退税、虚开增值税专用发票等增值税重大税收违法行为的，终止为其办理留抵退税，并自作出终止办理留抵退税决定之日起5个工作日内，向纳税人出具终止办理留抵退税的《税务事项通知书》。  税务机关对纳税人涉嫌增值税重大税收违法行为核查处理完毕后，纳税人仍符合留抵退税条件的，可按照本公告的规定重新申请办理留抵退税。  十五、纳税人应在收到税务机关准予留抵退税的《税务事项通知书》当期，以税务机关核准的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冲减期末留抵税额，并在办理增值税纳税申报时，相应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二）（本期进项税额明细）》第22栏“上期留抵税额退税”。  十六、纳税人以虚增进项、虚假申报或其他欺骗手段骗取留抵退税的，由税务机关追缴其骗取的退税款，并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有关规定处理。  　　十七、本公告自2019年5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退（抵）税申请表  国家税务总局  2019年4月30日 |